



04

해외 주요 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독일

독일 Contents

I. 국가 및 산업현황	91
1. 경제활동 인구	91
2. 산업구조 및 경제지표	91
3. 사업장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자수	91
4. 산업재해현황	92
II. 산업재해예방 구조	94
1. 행정체계	94
2. 법체계	98
(1) 제정경위	98
(2) 특징	98
3. 의무이행 확보	101
(1) 감독	101
(2) 수사	102
(3) 특징	103
4. 그간의 정책	104
(1) 기존에 시행한 주요 산재예방정책	104
(2) 최근 정책 동향	105

I

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2020년 기준)

- 인구 : 84,316,622명
- 경제활동인구 : 43,367,000명
- 실업률 : 5.0%

2. 산업구조 및 경제지표 (2020년 기준)

- 명목 GDP 3조 3,676억 유로(세계 4위)
 - 서비스업(70.4%), 제조업(22.9%), 건설업(6.0%), 농·임·수산업(0.7%)
- 1인당 명목 GDP : 40,494 유로(세계 19위)
- GDP 성장률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성장률(%)	2.1	3.0	1.1	1.1	-4.9

3. 사업장수 및 취업자수

사업장 규모	사업장수		취업자수	
구분	2018	2019	2018	2019
전 체	2,179,859	2,183,580	32,870,228	33,407,262
1 - 5인	1,416,080	1,409,495	3,071,886	3,064,113
6 - 9인	270,997	272,349	1,962,176	1,972,177
10 - 19인	229,596	233,817	3,091,497	3,148,280
20 - 49인	154,830	158,016	4,694,775	4,797,401
50 - 99인	57,316	58,275	3,968,530	4,043,044
100 - 199인	29,213	29,406	4,028,673	4,057,442
200 - 499인	15,773	16,035	4,771,965	4,853,473
500인 이상	6,054	6,187	7,280,735	7,471,332

4. 산업재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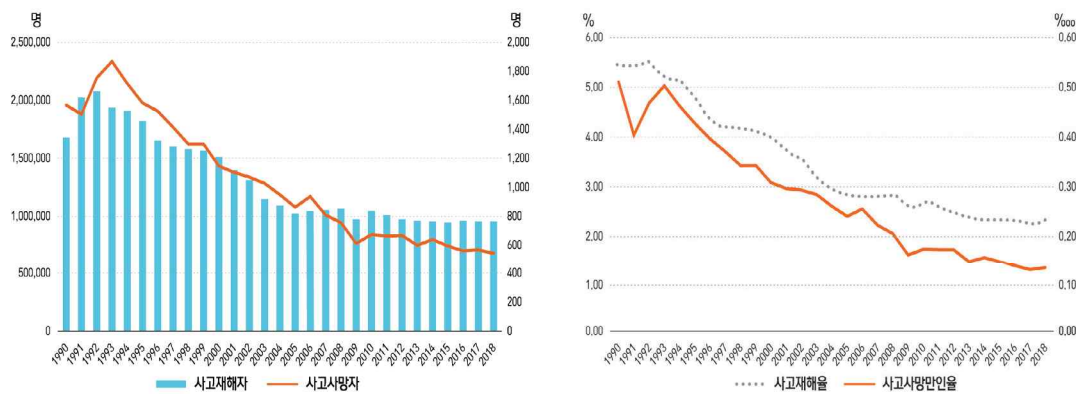
● 재해자 현황

연도	2019	2020	감소율(%)
보고대상의 노동재해	871,547	760,492	12.74
보고대상의 통근재해	186,627	152,823	18.13
총 보고대상 재해	1,058,219	913,315	13.69

● 사망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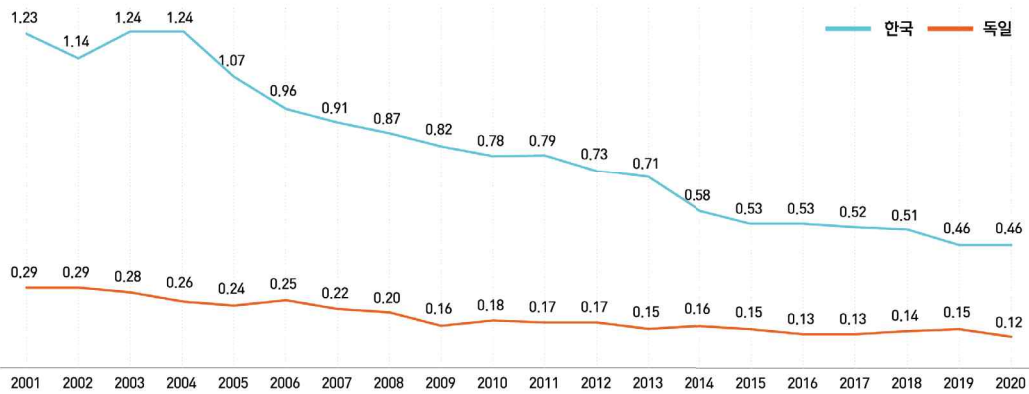
사고 종류	2019	2020	감소율(%)
노동재해 사망사고	497	399	19.72
통근재해 사망사고	309	238	22.98
총 사망 사고	806	637	20.97

● 사고사망자(사망만인율) 및 사고재해자(사고재해율) 추이(30년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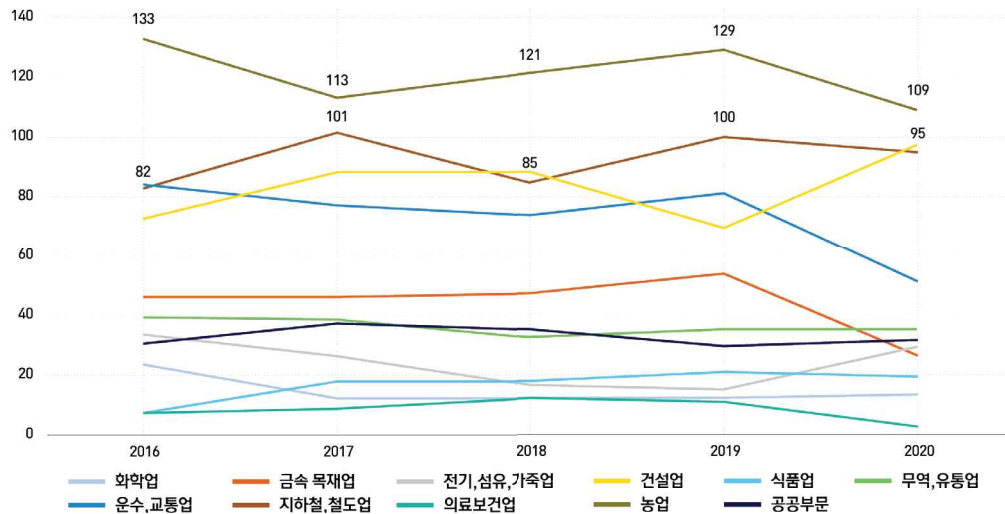
- 사고사망자(사망만인율) 및 사고재해자(사고재해율) 지속적 감소추세
- 사고재해자 및 사고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소원인은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위험한 작업에 대한 기술 사용의 증가 그리고 산업이나 업종 특성별 지속적인 산재예방 정책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판단

● 한국과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 최근 독일의 사고사망만인율(0.12)로 한국(0.46)의 4분의 1수준이나 통근재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영국(0.03)보다는 높은 편임

● 업종별 산재사망사고 추세



- 농업 → 지하철, 철도업 → 건설업 → 식품업 → 금속목재업 순으로 점유
- 건설업 사망자수는 최근 다시 증가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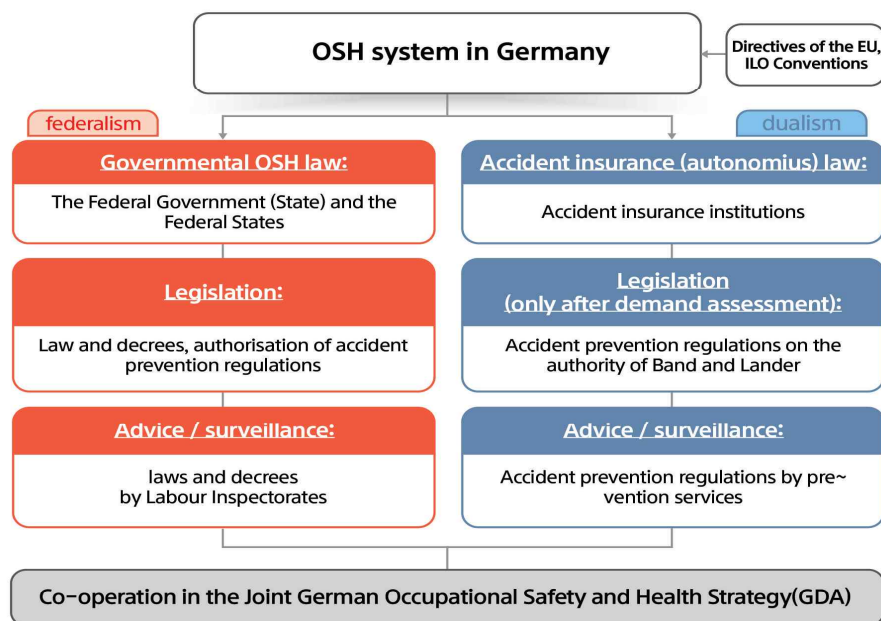
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담당기관 및 역할)

가. 이원적 산업안전보건체계 (Dual OSH System)

-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먼저 발달한 국가로서 역사·사회적 발전과정에 구축된 제도를 바탕으로 국가기관(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재해보험조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한 역할 수행

독일	구분	연방정부	주정부	재해보험조합	
	기관	연방노동사회부 (BMAS)	노동사회부(StMAS)	독일법정재해보험 (DGUV)	직종조합(BGs)
	기능	법령 제·개정 정책 수립	사업장 감독	산재예방 보상, 재활	사업장 감독 및 자문
	근거법	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산재예방규칙(UVV))	
한국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기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근거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국가기관

■ 연방정부(중앙정부)

● 연방노동사회부(BMAS)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
- 산재보험조합의 재해예방규칙 승인
- 유럽연합 안전보건 지침 적용
- 정책 수립, 산업안전보건 감독
- 산재보험조합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감독
-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부처의 8개 국 중 제3국에서 담당
- 산재보상 관련 업무는 제4국에서 담당

● 국가위원회

- 사업장안전위원회(Ausschuss für Arbeitsstätten – ASTA)
- 산업의학위원회(Ausschuss für Arbeitsmedizin – AfAMed)
- 산업안전위원회(Ausschuss für Betriebssicherheit – ABS)
- 생물학적 작업물질 위원회(ABAS)
- 유해물질위원회(Ausschuss für Gefahrstoffe – AGS)
- 제조물안전위원회(AfPS)

■ 연방 산업안전보건연구원(BAu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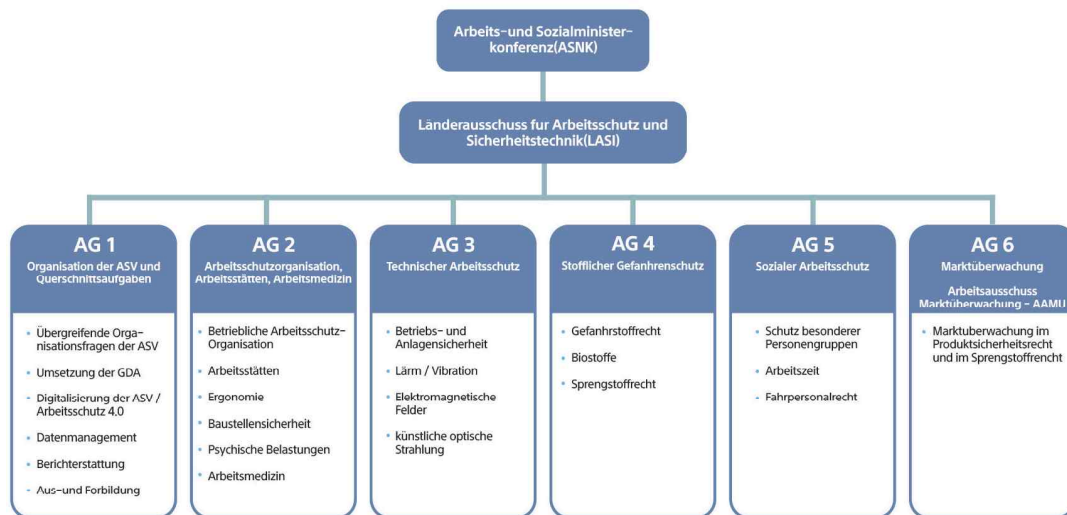
- 1996년 베를린에 본부를 둔 연방 직업의학연구원(BAfAM)과 도르트문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연방 산업안전연구원의 합병으로 설립
- 기술 자문, 연구 및 통계 작성
- 중점 전략 연구 과제
 - 화학물질과 생산물의 안전한 사용 보장
 - 사업장 환경을 보다 인간적 방식으로 설계
 - 근로관련 질병 예방과 근로능력과 보건 향상
 - 근로세계 변화의 영향과 산업안전보건 수단의 발전에 대한 이해
 - 산업안전과 근로세계의 소통

■ 주 정부(지방정부)

● 개별 주의 노동사회부(StMAS)

- 연방정부의 안전보건 법령 집행
- 대부분의 경우 주(州)는 연방상원(Bundesrat)의 대표를 통해 연방정부에 영향력 행사 가능

-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및 자문
 - ※ 산업안전감독 뿐아니라 근로감독, 환경감독 등의 업무도 수행
- 광업에 대한 산업안전감독은 다른 산업과 분리하여 수행하되, 해당 법정 산재보험기관과 협력 수행
- 기계기구 성능 검정
- 중대재해 조사
-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기술위원회(LASI: State Committee for OSH Technology)
 - 주정부간 노동사회부 장관회의(ASMK) 소속의 산업안전보건 및 안전기술을 위한 최고위 전문위원회
 - 연방정부와 산업재해보험주체 및 노동조합원의 협력 하의 독일 공동안전보건전략의 수립과 발전에 대한 업무 수행
 - 주정부간 안전보건 업무 조정
 - 연방정부 지원 업무



[LASI 조직도]

다. 재해보험조합

● 독일 법정재해보험(DGUV)

- 업종별 산재보험조합인 9개 산업BGs 및 29개 공공부문 산재보험조합으로 구성
-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동수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대표자 가운데서 임원진(Board of Directors)을 구성
- 예산 : 1억 7천만 유로(약 2,174억, 2017년 기준)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평균 보험료율은 1.3% 수준

- 산업재해 예방

- 연간 약 40만명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하 연구소*를 통한 산업안전보건 연구수행
- * 산업안전보건연구소(IFA), 산업의학연구소(IPA), 산업안전보건교육원(IAG)
- 산업재해 원인규명 등을 통한 예방대책 개발
- 사업장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산업재해 보상

-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재활기간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 일시금, 장애연금(20%이상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및 유족연금 등을 지급

- 산업재해 재활 및 직업훈련

-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을 제공하여 사회와 산재피해 근로자의 완전한 재통합을 목표로 함
- 의료재활은 산재발생시 응급처치, 입원치료, 통원치료, 재가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실시
- 직업재활은 전담관리자(Case Manager)를 통한 기존 직장유지 및 구직활동 지원, 근로자 직업훈련 비용 및 사업주 지원금 지원 등
- 사회재활은 산재근로자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개조, 특수차량 개조·구입 지원, 가사지원, 재활스포츠 지원 등

● 직종조합(BGs)

- 주요 기능

- 직종조합 회원 사업장 자율적인 안전보건 감독 및 자문
- 재해예방규칙(UVV) 제정 및 위험기계·기구·설비 검사
- 조합원 대상 교육훈련 규정 제정 및 제공

- BG 감독관은 재해예방규칙(UVV)의 집행을 기본으로 하지만, 주정부와 합의하에 연방정부의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여부도 감독은 가능

※ 벌금부와 권한(주정부만의 행정권한)은 없고 작업중지 권한만 있음

- 독일에 등록된 모든 사업장은 산업별 BG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직종조합(BGs)의 종류

- 원자재 및 화학산업 직종조합(BG RCI)
- 에너지, 섬유 및 전기 미디어제품 직종조합 (BG ETEM)
- 나무 및 금속 직종조합 (BGHM)
- 식품과 요식 및 숙박업 직종조합 (BGN)
- 건설업 직종조합(BG BAU)
- 행정관리 직종조합 (VBG)
- 운송산업 물류 원거리통신 직종조합(BG Verkehr)
- 건강서비스 및 복지 직종조합(BGW)
- 무역 및 상품물류 직종조합(BGH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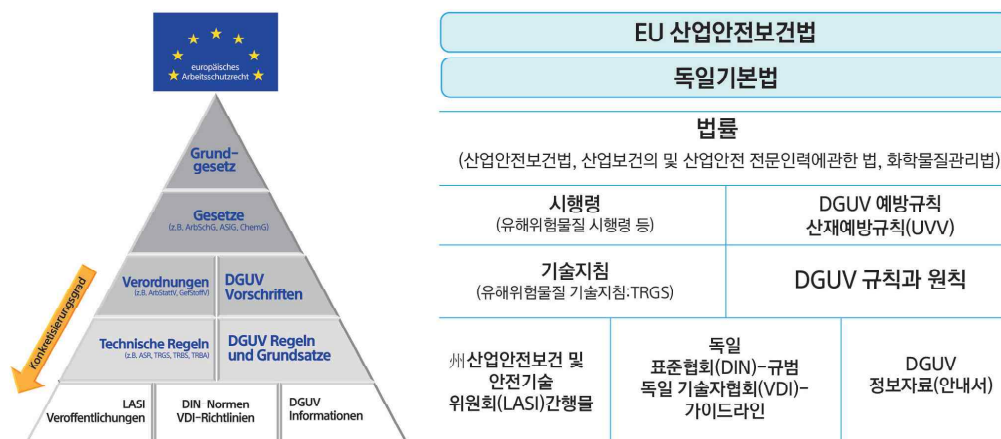
2. 법체계

(1) 제정경위

- 노동보호법, 노동안전법, 사회법전 등에 분산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률을 정리·통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노동기본법을 1996년 제정
- 다만, 기본적인 규정만 통합되었을 뿐이고 개별 구체적인 규정이 각 법체계에 분산된 상황은 여전함

(2) 특징

가. 개요



나. EU법

- EU 산업안전보건관련 근거법
 -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 1989년 EU OSH framework directive 89/931(1989년 EU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지침)
 - ‘EU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해 제정된 법이 1996년 독일 노동보호법(Arbeitsschutzrecht)임.
- EU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지침의 주요 내용
 - 제2장 사용자의 의무(Employers Obligations)
 - 일반조항(General Provision)
 -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 on Employers)
 - 사용자의 기타 의무(Various Obligation on Employers)
 - 근로자의 정보제공(Worker Information)
 - 근로자의 협의 및 참여(Consultation and Participation)
 - 근로자 교육(Training of Workers)
 - 근로자의 의무(Workers’ Obligations) 등.

다. 독일 기본법

- 우리나라 헌법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 또는 노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 제1조와 제2조에서 인간 존엄성·생명권·안전권 등에 대해 규정

라. 노동보호법

- 독일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법률
- 공식명칭은 ‘직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의 개선을 위한 노동보호의 조치들의 실행에 관한 법률’
- 주요 시행령
 - 작업장 설계·설치 시행령
 - 건설사업장 안전 및 건강보호 시행령
 - 작업도구의 준비 및 사용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보호에 대한 시행령
 - 감독이 필요한 설비에 대한 시행령
 - 사업장안전보건 조직에 관한 시행령
 - 단말기작업 안전 및 건강관리 시행령
 - 유해위험물질 시행령
 - 중량물의 수작업 취급시 안전과 건강관리 시행령

- 개인보호구 사용시 안전과 건강관리 시행령
- 생물학적 작업물질 업무에 있어서 안전과 건강관리 시행령

마. 산재예방규칙(UVV)

-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입법기관이 아닌 직종조합(BGs)에 의해 제정
- 직종조합 조합원에게 구속력을 가짐
- 사업주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노사 자치입법
- 국가법의 입법으로 곤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입법이 가능

※ 산재예방, 보상, 재활 및 직업훈련을 수행하는 DGUV는 사업장 감독 및 자문을 수행하는 BGs의 상위기관으로, DGUV 예방규칙은 DGUV에서 만든 포괄적 예방규칙이며, UVV는 BGs가 사업장 감독을 위해 제정한 구체적인 기술기준임.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가. 주 정부의 근로감독(Gewerbeaufsicht)

- 각 주의 근로감독청(Gewerbeaufsichtsämter)은 기술전문관청으로써 노동관련 이행 실태를 감독하는 업무를 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음
- 근로감독관은 관할 지역의 산업전반에 걸쳐 일하며 업무는 산업안전보건 감독 뿐 아니라, 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자문하는 것도 포함

법적 근거

- ◆ 영업령(Gewerbeordnung) | 모든 주는 사업장 근로감독기관을 설치할 의무
- ◆ 노동보호법(Arbeitsschutzgesetz)
- ◆ 주 자체 규정(Laenderregelungen)

■ 근로감독관 현황

- 직장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2019년 보고에 따르면 독일 모든 주의 총 사업장 근로감독관(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포함)의 수는 남자 2,098(65.6)명, 여자 1,101(34.4%)로 총 3,199명
- 주 별 사업장 근로감독관의 수

주	남 성	여 성	총 근로감독관의 수
Baden-Württemberg	359	207	566
Bayern	254	72	325
Berlin	52	51	102
Brandenburg	40	39	80
Bremen	18	6	25
Hamburg	40	21	61
Hessen	157	102	259
Mecklenburg-Vorpommern	34	40	74
Niedersachsen	420	226	646
Nordrhein-Westfalen	407	127	534
Rheinland-Pfalz	131	33	164
Saarland	19	6	25
Sachsen	59	68	127
Sachsen-Anhalt	35	54	89
Schleswig-Holstein	37	19	56
Thüringen	37	28	66
합계	2,099	1,099	3,199

■ 산업안전 감독의 종류

- 적극적인 산업안전감독(aktive Überwachung)
 - 예방을 목적으로 감독기관 주도하에 행해지는 기획감독
 - 감독의 우선순위 결정을 사고 발생 잠재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위험성 기반 감독 수행
- 반응적인 산업안전감독(reaktive Überwachung)
 - 특정 사건 또는 사고에 의해 행해지는 특별감독
 - 신고, 사고, 집단 직업병 발생 등의 사유로 감독 실시

나. 직종조합(BGs)의 안전보건자문·감독관

- 사회보장법(Sozialgesetzbuch)에 따른 근로감독관(Aufsichtsperson)
- 회원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자문하고 재해예방규칙(UVV) 준수여부 관리감독
- 규정위반시 작업중지 권한을 지님
- 사고조사, 산재여부 판단, 보상수준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 재해근로자를 치료한 병원은 재해보험조합으로 청구서 발송

(2) 수사

- 근로감독관이 법적으로 위임된 임무수행을 위해 지방경찰이 지닌 권한과 동일한 모든 법적 권한이 부여
- 정보의 요구: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 가능
- 방문권한: 정규 업무시간에 사업장에 방문 가능
- 점검권한: 사업장 설비, 개인 보호구, 업무 절차 및 진행상태를 점검
- 시정요구(Revisionsschreiben): 개선기간을 주어 시정을 요청
- 시정명령(Anordnung):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명령
- 강제조치(Zwangsmaßnahme):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별 주의 행정 집행법에 따라 강제조치가 통고
 - 과태료
 - 지불 의무가 있는 배상금
 - 직접적인 강제권 행사: 사업장 일부 또는 전체의 운영 정지 등이 고려
- 벌금절차(Bußgeldverfahren):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동시에 해당 행위가 벌금부과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법에 의거 검찰 송치 및 관계자에 경고 내지 벌금통지서를 발행하는 일련의 절차

- 고발조치(Strafanzeige): 조사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형사소송법에 의거 담당 검찰에 인계

(3) 특징

가. 이원적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Dual OSH System)

- 국가기관인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을 근로로 정책 수립 및 사업장 감독 업무 수행
- 직종조합은 산재보험주체가 재해예방규칙(UVV)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자문을 수행
- 주 정부와 직종조합 산업안전보건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을 관리·감독하고, 상호 경험적 지식을 교환

나. 지방분권형 감독 체계

- 연방정부(중앙정부)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정책수립 업무를 주로 하고, 주 정부(지방정부)에서 주로 노동보호법 등 법률이 준수되는지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수행

4. 그간의 정책

(1) 기존에 시행한 주요 산재예방정책

독일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Gemeinsame Deutsche Arbeitsschutzstrategie, GDA)

- 배경 : 인간중심의 안전한 근로환경 보장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효과적 집행

- 주체 :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3대 주체)

- 근거 : 독일 노동보호법(Arbeitschutzgeset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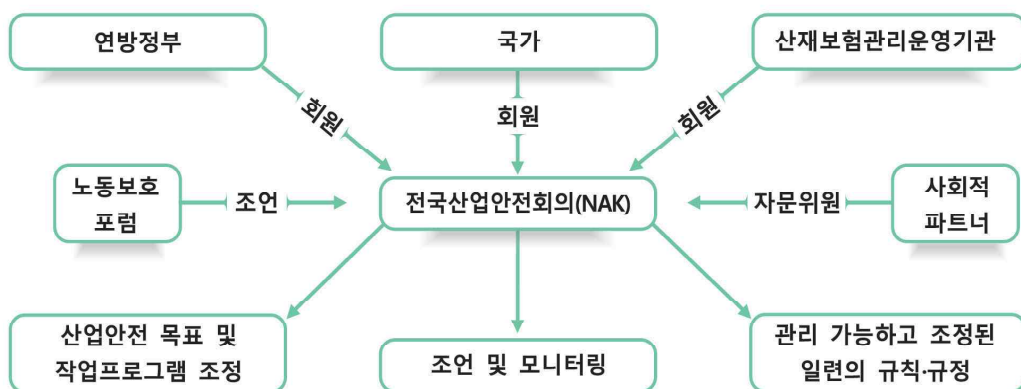
- 추진현황 : 제1차 GDA('08~'12), 제2차 GDA('13~'18), 제3차 GDA('19~'23)

※ 안전보건 분야의 세계적 변화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08년부터 5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

● 연차별 GDA 목표

1차 GDA('08~'12)	2차 GDA('13~'18)	3차 GDA('19~'23)
① 산업재해 빈도 및 강도 감소 ② 근골격계 부하 및 질환 감소 ③ 피부질환 빈도 및 강도 감소	① 안전보건조직의 개선 ② 근골격계 위험 및 질환 감소 ③ 노동에 기인한 심리·정신적 부담 및 건강악화 방지	① 독일 전역에서 단일하게 사용되는 위험성 평가의 도입 ② 정신적 스트레스 대응 작업장 설계 ③ 위험한 발암물질의 안전한 취급

● GDA 수립 주체 및 자문기구



※ 산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 포럼을 매년 개최하는 등 현장의 조언을 적극 청취하여 GDA 수립시 반영

● 독일 GDA 시사점

- 정책의 작동성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

- 사업대상 및 유해위험 요인별 우선 순위를 정해 정책 집행

- 중소기업에 적합한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산재예방정책 수립 및 산업 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전파 중점 추진

(2) 최근 정책 동향

가. 기업의 자율예방시스템

- 노동보호법(1996년) 및 노사자치 입법으로서 재해예방규칙(UVV) 제정을 통해 법규준수 항목을 일일이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 활동이 정착될 있도록 법규체계를 개편
- 연방정부와 주정부 및 직종조합(BGs)이 상호보완적(이원적 조직체계) 역할을 담당하면서 정책수립·법률제정·행정집행 업무를 수행, 핵심 산업안전보건 전략은 각 기관과 노사대표가 참여하는 국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NAK*)에서 마련

* 연방, 주정부 및 DGUV 대표 각3인,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고문 자격) 각 3인으로 구성, 산업안전보건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개발, 실행전략 평가

-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직종조합(BGs)에 사업장 감독에 대한 상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 하여 예방활동의 효율성 도모
- BGs 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및 안전보건자문, 기계설비 검사,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술 지원 수행
- 위험성 평가제도
- 노동보호법 제5조 및 제6조를 근거로 1996년 도입
- 입법 초기 사용자단체측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사업주에게 폭넓게 재량을 인정하는 법 형식을 채택하여 의회가 승인
-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물질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질서위반 으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형사기소 가능

* 최대 50,000유로까지 부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

◆ 산업보건의

- 관련 법령으로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2,389명이 활동 중

◆ 안전관리 전문인력(Fachkraft für Arbeitssicherheit-SiFa)

- 산업안전보건과의 함께 고용주에게 안전보건 자문

◆ 안전담당자(Sicherheitsbeauftragte-SiBe)

- 20인 이상(고위험 사업장은 20명 이하도 포함) 사업장의 보호구 확인,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 활동

나. 안전문화 확산

■ 독일 안전문화운동 배경

- 유럽에서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사고에 따른 원자력안전 자문단(INSAG)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
- ‘안전문화운동’라 함은 안전관련 법, 제도, 규제 등 제도보다 안전성 확보에 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식
- 독일에서는 안전문화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65년 이후 광범위하게 형성
- 운동 시작 당시 독일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인식으로는 ‘안전 활동을 비용 낭비로 치부하는 인식’이라고 규정
- 안전을 위한 비용 지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로 인식되어야만 한다는 의미

■ 독일 안전문화운동 효과

- 60년대 중반 안전문화운동이 시작할 당시 독일의 재해율은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높은편
- 높은 자동차 보급률과 고속도로 이용률로 통근사고 사망자수가 영국의 두배 수준
- 독일에서 60년대 중반이후 실시되었던 대대적인 안전문화운동은 그 수치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함

■ 독일 안전문화운동 추진주체

추진주체	정부(BMAS)	독일재해보험조합(DGUV)	노동조합
주요 역할	- 참여자(자원봉사)에게병역혜택 및 교육훈련 등 제공을 통해 안전문화 운동 전문 인력으로 양성	- 안전 관련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안전문화운동 전개, * 고용자단체 중앙본부, 노동조합 중앙본부, 적십자 등	- 사업장 정기방문, 안전진단 및 경합·지식 등을 지원하는 멘토링 수행

붙임1 제3차 독일산업안전보건전략(GDA) 요약본

다음의 내용은 2016년 12차 국가안전보건포럼에서 의결된 내용임

(1) 목표

- 제3차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은 위험성 평가 단 하나에 기반
-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의 목표는 하나의 위험성 평가이어야 함
- 총괄적 도구로서 위험성 평가 제시

(2) 커뮤니케이션(외부)

- 위험성 평가를 소규모사업장 및 영세규모사업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검토
- 독일 전역에 단일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 및 기준 공표
- 주제를 미디어에 공개하고 방송한다(예, TV-Spot).
-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이니셔티브 2024”를 안내하고 상금을 걸어 경쟁 유도

(3) 커뮤니케이션(내부)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작업프로그램 간에 경험을 내부적으로 교환

(4) 교육훈련

- 산업안전보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교육훈련 시설 보완

(5) 내적 구조(프로그램)

- ① 프로그램 전개를 위한 인적자원 확보
- ② 위임 및 위탁 기준 마련
- ③ 사업관리 절차 확보
- ④ 포괄적인 지도 감독
- ⑤ 작업프로그램의 지도, 홍보 활동 및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 ⑥ 출장업무를 포함한 작업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인식
- ⑦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코디네이터 역할의 명확화 및 강화
- ⑧ 행정 사항 처리
- ⑨ 예산확보
- ⑩ 신속한 회계처리

(6) 평가

- 홍보 활동에 관한 평가를 위한 부가적 전문지식의 준비가 요구
-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 작업프로그램들의 프로세스평가 결과를 고려
- 초기 총괄평가 이후 실제적인 프로세스와 위험성과 관련된 피드백이 요구

(7) 공모 및 공고

- 공모 및 공고의 구성 요소로서 산업안전보건을 의무적으로 규정

(8) 전략

- 통합적 전략: 건강촉진과 산업안전 및 건강보호.
- 단지 사업장의 1% 또는 2%만이 달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행시키는 전략 필요
- Security와 Safety 간의 연결점(인터페이스)들을 공격적으로 해결
- 중심적 도구로서 ORGA(소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조직의 질을 점검·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평가도구)는 위험성 평가로 활용 가능

(9) 감독

- 사업장에 임명된 산업안전전문인력은 위험성 평가의 제출을 위한 전제조건
- 기업/사업장에 의한 의무적 안내

(10) 협력

- 4.0-프로세스를 고려
- 독일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GDA)과 긴밀한 협력이 요구

(11) 기타

- (외국인)재재하청업자의 관리는 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
- 파견노동 문제를 보다 강하게 고려
- 데이터 전달에 있어 IT-기술적 문제들을 해결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계획 수립

붙임1 제3차 독일산업안전보건전략(GDA) 요약본

독일의 다소 복잡해 보이는 산업안전 정책과 집행활동에 관련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총괄 조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재해보험조합의 법정 연합체가 주도하는 산업안전보건공동전략(GDA)에 의해 달성된다. 공동전략의 목적은 독일안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기업이 작업장 안전과 보건을 강화할 유인을 만드는 것이다. GDA는 2008년 11월 산업안전보건법과 독일 사회법전 제7권(Book VII)의 개정으로 설치되었다. 독일 연방 사회노동부와 16개 주 정부, 그리고 산재보험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각 협력기관이 만나서 국가적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계획, 조정, 집행과 평가에 대해 결정하고, 사회보험기관, 직업단체, 산업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연구소와 대학,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독일은 주정부 기관은 지역단위로, 산재보험조합(BG)은 업종 또는 산업별로 조직되어 있어 한 지역의 주정부 감독관은 여러 명의 BG 감독관을 상대하거나, 한 명의 BG 감독관도 여러 명의 주정부 감독관을 상대하게 되어 효과적인 감독을 위한 협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 GDA는 효과적인 정책조정 및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GDA의 주요 관심 사안은 다음과 같다

- 공동의 산업안전보건 목표와 공동의 작업 프로그램 개발 : 연방정부와 연방 주정부, 그리고 산재보험기관은 산업안전보건 공동목표에 동의하고 공동의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한다. GDA 작업프로그램은 기업 수준의 산업안전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룬다. 프로그램은 작업장은 안전보건 개선을 위해 고용주, 경영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지원을 제공한다.
- 고용주에 대한 감독과 자문 개선 : GDA는 독일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두 축인 산업안전보건 당국과 산재보험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협력은 감독기관의 업체 방문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다.
- 이용자 친화적인 규정과 규제 : GDA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복잡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조화시키고 최적화하고자 한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안전보건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에 관해 개선된 법적 확실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규칙 및 규제의 재구성에 관한 GDA 지침은 국내법이 우선함을 분명히 한다. 엄격한 요구사항 테스트를 거친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기관은 새로운 산재예방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중 규제가 없어야 한다. 이 분야의 산재보험 기관의 임무는 “산업 규칙”에 따라 부문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국가 법률과 규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가) 법적 근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제20조a 및 제20조b에서는 독일의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GDA)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a 제1항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들이 산업안전보건의 관점에서 독일의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을 개발하고 동 전략의 시행 및 후속적 개발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와 직업병 및 노

동에 기인한 건강위험예방과 같은 법적 과제의 인식과 더불어 연방정부, 주정부 및 산재보험운영 기관들은 독일의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여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0조b는 국가산업안전보건회의(Nationale Arbeitsschutzkonferenz, NAK)의 업무로 독일의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의 개발, 조정 및 후속적 개발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회의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대표 및 산재보험운영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나) 공동 산업안전보건 목표

지난 2008년 이래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시스템에 도입된 이 은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인간친화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시행하고자 마련되었다. 무엇보다도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하여 감시·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방 정부 및 주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행정체계와 산재보험조합의 재해 예방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산재보험관리운영기관의 사업장 안전보건감독과 주정부의 안전보건감독의 관청 간의 협력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의 목표는 약 3년~5년 단위로 설정되고, 이 기간동안 GDA의 운영주체들은 제시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점사업 및 공동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2021년 현재 3차적으로 공동산업안전보건전략으로 선정된 목표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위험평가를 통한 예방(Arbeit sicher und gesund gestalten: Prävention mit Hilfe der Gefährdungsbeurteilung)”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골격계 긴장 완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장 설계
- 정신적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적절한 사업장 설계
- 위험한 발암물질의 안전한 처리

위 언급된 공동산업안전보건목표는 공동사업영역과 노동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시행된다. 위험평가 및 산업안전보건 조직에 대한 공동지침에 따른 사업장 감독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세 가지 작업 프로그램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구성요소와 다수 행위자 기반의 접근방식을 적용한다. 활동에는 감독 및 컨설팅, 인식 제고, 정보자료 및 이벤트, 자격, 지침 및 IT 수단, 모범 사례 공유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은 GDA 행위자와 사회적 파트너가 가장 먼저 수행하며, 작업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장하고 파급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관련 파트너와의 협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3차 기간 동안에는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0,000개 이상의 사업장 감독을 실행할 계획이다.